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
------------	----

제출년월일 : 2003. 3. 1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구세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세등을 납부했음을 신고 하였을 경우에
는 직접 관련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민원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납부여부를 알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도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 (안 제10
조)

3.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을“(부과사실등의 신고)”로 하고 본문중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부과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남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채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등의신고)----- ----- ----- -----부과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